

셉티코 산업안전 환경 알리미

화관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사업장-장외영향평가서 11월까지 꼭! 제출 바랍니다.

안녕하십니까! 셉티코 산업안전 환경 알리미입니다.

이번 달 알리미는 2018년 10월 2일 실시된 "화학물질 안전원 세미나"와 관련 현재 환경부 공고 제2017-778 호에 따라 종전 「유해화학물질관리법」 및 현행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위반사항에 대해 자진신고를 한 사업장의 장외영향평가서, 위해관리계획서 제출기한을 공지드립니다.

1. 제출대상

종전 「유해화학물질관리법」 및 현행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위반사항에 대해 자진신고를 한 사업장으로 장외영향평가서,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

2. 제출 기한

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등 **2018년 11월 30일 까지** (유예기간 종료 바로 전 접수 방지)

3. 주요내용

- (1) **2018년 11월 30일까지 화학물질 안전원 접수분에 한하여, 심사를 완료한 후 유예기간인 2019년 5월 21일 이내 영업허가를 진행하도록 처리**
- (2) 자진신고 건은 적법한 절차로 진행중인 사업장과 의 형평성을 고려, 조건부 우선 진행 절차 미적용
- (3) 영업허가와 관련 없는 사업장의 경우 장외영향평가서 접수증만으로 설치검사를 진행 하고, 2019년 내 장외영향평가서 등 처리

*** 상기 화학물질 안전원 세미나 내용을 토대로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사업장의 경우, 반드시 10월 중으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착수를 권유합니다. (자진신고 누락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더 빠른 진행 요함)**
(기존 고객사의 경우 변경허가 등 대상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.)

산업안전 환경컨설팅
장외영향평가, 설치검사
PSM/이행평가/자체감사/위험성평가
위해관리계획서
유해위험방지계획서
위험물인허가
안전보건개선계획서

플랜트설계, 구매, 공사(EPC)
방폭/산업안전 EPC
전소방설계 및 공사
산업플랜트
화공/전력 플랜트
원자력/발전플랜트
특수설계&컨설팅

산업안전 환경진단
안전관리대행
산업안전진단
연구실정밀안전진단
사업장 시설물관리
비산배출진단점검